3-1-2 일상생활고충/개인 신상관련 고충/정신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 관련 상담

○상담개요

네팔 근로자 A씨는 2019.07.06. 오전 9시경 사업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데 약을 먹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업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도와 달라고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업주(인천에 있는 송강농장(주))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확인한 결과 2019.07.05(금) 근로자는 갑자기 줄을 목에 매면서 죽는다고 농장을 빙빙 돌고, 농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농장 위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가 발견함
-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근로자를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산을 넘어가고, 울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하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네팔 사람에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여 서울에 있는 쉼터에 들어감
- 농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 약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약을 먹지 않고, 물이나 음료수를 주면 이상한 약을 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음료수도 마시지 않음
-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인권문제로 강제 입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네팔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하였으나 휴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음
- 창원에서근로자가 있는 곳까지 방문하기 너무 힘들어서 서울에 있는 네팔 공동체 대표에게 연락하였으나 근무라서 퇴근 후에 가겠다고 함. 사업주는 언제 오느냐고 5분마다 전화하고, 근로자 A씨는 점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함. "사장님하고 한국인들이 자기를 해칠려고 하고 억지로 차에 태울려고 하고, 독약을 먹여 죽여서 가방에 포장을 하여 네팔에

보내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나를 살려 주세요" 라고 울고 소리 지르고,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함. 실제 경찰도 와서 일단 A씨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을 보호해 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설득을 함. 6시에 퇴근한 공동체 대표, 여성쉼터 대표, 네팔 사람 등 3명이 근로자 A씨가 있는 사업장에 방문하였고 밤 9시경에 서울에 있는 여성쉼터에 데리고 옴

- 근로자 A씨의 남동생이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아버지의 병환으로 회사로부터 휴가를 받아 2019.07.05. 네팔로 출국하여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돌보고 있고, A씨의 남편도 네팔에서 전기관련 일을 하다가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4개월 전부터 인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 근로자의 남동생은 지금 A씨의 건강상태는 본국에 있는 아버지랑 똑같은 증세라서 최대한 빨리 출국하여 네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을 것이라고 함

- 2019.07.07.(일) 센터에서는 근로자 A씨가 최대한 빨리 네팔에 갈 수 있도록 2019.07.08. 항공권을 구매하고, 다행히 여성쉼터에 있는 사람이 2019.07.08 네팔에 가기 때문에 그 분이 동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네팔 공항에 동생이 마중 나오면 근로자를 인계할 수 있도록 동생에게 비행기 도착 시간을 알려줌

- 2019.07.08. 쉼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못 자게하고, 때리고 물고, 칼을 들고 죽어도 네팔에 가지 않겠다고 밤새 난동을 피웠으며, 공항에 갈 시간까지 위험한 행동을 해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병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위해 대사관에 연락을 하여 대사관에서는 10시까지 여성쉼터에 도착하기로 함. 대사관 직원은 도착하자마자 박**신경정신과의원에 데리고 갔으나 병원에서는 가족의 동의 없이 입원은 안 된다고 함. 네팔에 있는 동생에게 연락하여 병원에서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고 동생은 2019.07.08.(월) 밤 8:40분 비행기로 한국에 오기로 함. 병원에서는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면 주사를 맞으면 24시간까지는 안전하다고 함

- 2019.07.9.(화) 오전 5:30분에 동생이 한국에 도착하여 오전 8시경에 서울 여성쉼터에 방문하였고 근로자 A씨를 박** 신경정신과의원에 입원시키고 7월12일까지 치료받기로 함

-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사업주는 A씨의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주를 보자마자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업주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약도 거부하고 있다고 함. 근로자 A씨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지

만 약물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 2019.07.10. 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하였고 근로자는 좋아지고 있다고 함
- **병원 담당의사는 근로자 A씨의 정신적인 문제는 금방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타난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병력에 대해 근로자의 동생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동생은 누나의 증세가 나타난 것은 차음으로 알고 있으며 본국에 아버지가 같은 증세로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받고 있는 상태임을 설명 함
- 근로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본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한국에 오겠다고 함. 병원에서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함
- 2019.7.11.(목) 동생이 서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구직등록하여 구직필증을 발급받고 일시 본국 방문으로 하기 위해 구직알선 정지신청을 함
-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개인물품을 서울에 있는 여성쉼터까지 수송하고, 동생과 함께 7월12일(금) 네팔로 출국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9.07.12.(금) 오전 9시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동생과 함께 10시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1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14.:25 비행기를 타고 갔으나 네팔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천공에 있는 호텔에서 2일 지내다가 7월15일(월) 다시 네팔에 갔다는 연락을 받음. 동생은 누나를 네팔에 데려다주고 7월17일(수)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조현병(정신분열증)

· 분류 : 정신 및 행동장애
· 발생부위 : 뇌
· 증상 : 망상, 무논리증, 무욕증,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정서적 둔마, 환각
· 진료과 : 정신건강의학과
· 관련질환 : 망상장애, 양극성 장애

<정의> 정신분열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갖는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를 유발하는 뇌질환이다. 이것은 비교적 흔한 병으로 백 명 중 한 명이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걸릴 수 있으며 남녀 빈도는 비슷한데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학

계에서는 뇌의 기질적 이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정신력이 약하다거나 부모의 잘못된 양육, 악령이나 귀신 때문에 발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증상> 정신분열병의 발병은 서서히 진행하여 주된 증상은 환청, 망상, 이상행동, 횡설수설 등의 증상과 감정이 메마르고 말수가 적어지며 흥미나 의욕이 없고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흔히 환각을 경험한다. 누군가 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질병 초기에는 환자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되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환각 현상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환청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며, 그 내용은 환자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간섭하고 비평하는 내용 또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들이다. 어떤 환자들은 이런 환청과 대화를 하기도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망상은 환각과 함께 정신분열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개인적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망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내가 구세주이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종교망상을 자주 볼 수 있다. 망상은 합리적인 설득이나 논쟁으로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에 적절한 것과 적절치 못한 것을 가려 내지 못하고 타인의 의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불쑥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쉽게 산만해지며 집중을 잘 못한다. 사고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며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고 대화 중에 주제가 이것저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신분열병 환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심각하거나 슬픈 말을 하는 상황에서 웃는 것 등의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기도 한다. 감정이 메말라 감정표현이 없거나 기쁘거나 슬프다는 정상적인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무표정해집니다.

<진단> 진단은 자세한 병력을 듣고 환자의 정신상태를 검사하여 내리게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족이 그동안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첫 발병인 경우 다른 신체질환이나 뇌질환 때문에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검사, 뇌컴퓨터단층촬영(CT), 뇌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뇌파검사 등을 하게 되고 또, 환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리검사를 한다. 진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와 환자와의 면담,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

병력과 증상에 관한 정보이다

<치료> 정신분열병의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로 나눌 수 있다.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증상의 상당 부분을 호전시킬 수 있다. 약물치료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정신분열병 환자를 스트레스의 영향을 덜 받도록 보호하는 작용을 해 주며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항정신병약물에 대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의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단지 진정시키거나 잠을 자게 하는 약이 아닌가, 약을 복용하면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항정신병약물은 의존성이 없는 약물이다. 또한 단순한 수면제나 안정제는 망상, 환청과 같은 정신분열병 증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즉 항정신병약물은 정신분열병 증상을 목표로 사용되는 치료제이다. 약을 복용할 경우 초기 부작용으로 동작이나 발음이 어둔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결코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음성증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동작이 둔해지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적은 우수한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다각적 치료로 접근해야 한다. 치료방법에는 개인정신치료, 가족치료, 집단정신치료, 입원치료, 지역사회의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있다.

<주의사항> 환청이 있을 때 환자는 환청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대화를 주고받거나 환청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즉,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혼자서 웃거나 울기도 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어떤 생각에 몰두되어 말을 걸어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환청을 느낄 때는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니?" 하고 환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지금 네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라며 환자의 행동에 대해 따지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도록 해 주의를 다른 곳에 집중시킵니다. 응급한 상황일 때는 약을 추가로 먹게 하거나 주치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비웃거나 놀리는 말투, 설득하거나 위협하는 말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정신질환자 귀국지원 업무 절차

1. 신고 접수	사용자 또는 보호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한 송출국대사관
2. 현장방문	육안 사실 확인(의견서 작성 → 관련 기관 안내)
3. 병원진단 및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사업주 또는 근로자 부담)
4. 법무부 신고 및 협의	강제 출국 대상 여부 심사
5. 임금 및 보험금 계산	사업주와 협의 · 추진

	(귀국비용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청구, 국민연금반환금 청구, 퇴직금 및 급여 청산
6. 출국조치	법무부(주한 송출국 대사관 입회)
7. 보호자 인계	법무부(해당국 입국장에서 보호자에게 인계)
<유의사항> - 강제 퇴거의 권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가지고 있으며 강제출국과 관련 국제적 인권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 주한 대사관과 공동 추진 - 해당국 대사관 직원이 근로자와 함께 본국에 귀국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요구 - 항공료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국비)에서 지원 가능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제1항 제2호①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음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제1항 제5호 ⑤ 사리 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 장애인,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 정신보건법 제26조 (응급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 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

송한다. [개정 2000.1.12,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7.2]]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 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제25조 제1항제5호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직업안전 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되지 전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1회 변경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도 따른 3회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25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회 추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3.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법 제25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전문개정2010.4.7.]